

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 1. 15 선고 2018나3107(본소), 2018나3114(반소) 판결 [매매대금
청구의 소 (청주) 매매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[담당변호사 권택인]

피고(반소원고) 항소인

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[담당변호사 김정태]

변론 종결 2018. 11. 20

판결선 고 2019. 1. 15

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. 7. 27. 선고 2017가합202781(본소), 2017가합 202798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피고(반소원고, 이하 ' 피고' 라 한다) 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 원고' 라 한다) 에게 100, 000,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130.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201,737,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. 11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가.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

아니하고,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[① 피고는, 이 사건 건조기 등에 대한 민원발생은 주로 원고가 제작한 설비의 성능미달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영역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제 1심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, 공주시에서 시설 철거를 요구한 이유 중에서는 '악취로 인한 민원' 및 '피고 가 제공한 탈취시설의 자연발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 '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,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책임영역에 대해서만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만이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② 한편 피고는, 이 사건 건조기를 재 매수해주겠다는 D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매매 계약을

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, D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

그러나을 제 1호증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건조기를 재 매수해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]

나.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판사 김 룡판사 손영언